

2025년 해외진출 종합지원사업(해외지사화)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지사화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년 7월 9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지사화사업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신규 판로개척 및 수출증대 등 글로벌 경쟁력 함양
- ☐ 사업기간: 2025. 1. ~ 11.
- ☐ 사업내용: 해외지사화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 지원규모: 4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 ☐ 지원내용: 해외지사화 사업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2025년 해외지사화 사업’ 신청 시 발생하는 참가비의 80% 지원
 - 단, ‘발전’, ‘확장’ 단계를 우선 지원하며 긴급지사화도 지원 가능
 - 긴급지사화(3개월)의 경우 협약(수행기관-기업)기간이 2025년 11월 내에 종료될 시 지원 가능

예시) 협약기간(2025년 9월 ~ 11월) 지원가능 / 협약기간(2025년 11월 ~ 2025년 1월) 지원불가

*수행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소요비용의 80% 지원)
 - 완료보고서 접수 후 지원금 지급
 - 부가가치세(VAT), 송금(이체)수수료 지원 제외

※ (수행기관-기업) 협약기간이 2025년도를 넘어갈 시 (진흥원-기업) 사업기간에 따라 2025년도 사업수행 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하단의 예시 참조](#))

지원금 산출 예시					
수행기관-기업 협약기간(1년 기준)	(2025년 기준) 진흥원-기업 사업기간	기업부담금		산출식	지원금
2025. 2. ~ 2026. 1. (12개월)	10개월	300만원 (부가세 포함)	272만원 (부가세 제외)	$272\text{만원} \times 80\% \times 10\text{개월} \div 12\text{개월}$	181만원
수행기관-기업 협약기간(6개월 기준)	(2025년 기준) 진흥원-기업 사업기간	기업부담금		산출식	지원금
2025. 7. ~ 2026. 12. (6개월)	5개월	220만원 (부가세 포함)	200만원 (부가세 제외)	$200\text{만원} \times 80\% \times 5\text{개월} \div 6\text{개월}$	133만원

연도	(수행기관 - 기업)				(진흥원 - 기업)	
	구분	수행기간	협약기간		사업기간 (최대 2025년 11월 까지)	
2025년	1차	6개월	2025. 2. ~ 2025. 7.	→	2025. 2. ~ 7.	6개월
		1년	2025. 2. ~ 2026. 1.		2025. 2. ~ 11.	10개월
	2차	6개월	2025. 3. ~ 2025. 8.	→	2025. 3. ~ 8.	6개월
		1년	2025. 3. ~ 2026. 2.		2025. 3. ~ 11.	9개월
	3차	6개월	2025. 5. ~ 2025. 10.	→	2025. 5. ~ 10.	6개월
		1년	2025. 5. ~ 2026. 4.		2025. 5. ~ 11.	7개월
	4차	6개월	2025. 7. ~ 2025. 12.	→	2025. 7. ~ 11.	5개월
		1년	2025. 7. ~ 2026. 6.		2025. 7. ~ 11.	

※ (수행기관-기업) 협약기간이 2025년도에 종료되는 기업은 (진흥원-기업) 사업기간 종료 후 진흥원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2025년 12월 초까지)

2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고 수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2025년 해외지사화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참가비 납부 및 협약체결을 완료(예정)한 기업
- ※ 선착순 내에 신청하였더라도,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해당하는 중소기업(별첨1 참조)
- ※ 사업자등록증 내 용인 주소 확인

□ 제외대상

구 분	내 용
참여 제한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도/휴·폐업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서류 허위제출	◦ 사업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부적합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중복 참여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유사,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 유사사업: 진흥원 '2025년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는 '2025년 지원사업 안내문' 참고(별첨2)

3 접수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 7. 9.(수) ~ 7. 30.(목) 17:00

□ 신청기간: (선착순) 2025. 7. 16.(수) 9:00 ~ 7. 30.(수) 17:00

- ※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선정 / 단, 지원조건 및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시 지원을 제외할 수 있음
- ※ 접속이 물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 단, 2025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별첨2 참조)

□ 접수방법: 용인기업지원시스템 활용 온라인 접수 (<https://ybs.ypa.or.kr/>)

①	②	③	④
용인기업 지원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상단의 '기업지원' 탭에서 '지원사업 공고' 클릭	화면 중간 '용인시산업진흥원' 클릭 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공고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에서 수행계획서 작성 및 기타서류 업로드 제출
 -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저장(스캔)하고 제출
 - ※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시 지원 제외
 - ※ 파일의 용량이 큰 경우(10MB 이상) 업로드가 안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을 나누어 업로드

□ 문의처: 판로지원팀 전병철 선임(☎031-323-4694)

4

제출서류 및 지원금 지급 안내

□ 제출서류

구분	번호	서류명	참고사항
신청 서류	1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협약서	진흥원 양식
	2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3	사업자등록증명원	PDF 사본 제출(발급 3개월 이내 분)
	4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5	(수행기관-기업) 해외지사화 협약서	수행기관과 맺은 협약(계약)서
	6	참가비 납부 증빙서류	납부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 파일의 용량이 큰 경우(10MB 이상) 업로드가 안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을 나누어 업로드

※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시 지원 제외

□ 지원금 지급방법: 사업완료보고서 접수 및 검토 후 지원금 지급(후지급)

- (진흥원-기업) 사업기간 종료 후 수행기관에 사업 완료/진행 여부 확인
- 사업완료보고서 접수 및 검토 후 지원금 지급

5

추진일정

□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선착순)	제출서류 검토 및 실사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완료보고 / 지원금 신청	사업 완료
• 사업신청접수	• 온-오프라인실사 • 결과통보	• 사업수행 • 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 완료보고서 제출 • 증빙서류 제출	• 지원금지급 • 사업완료
7월	7~8월	8월 ~ 11월	12월 초	12월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수급	☐ 부정한 방법(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중단 · 실패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지원기업 부도, 폐업, 대표자 사망 등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	면제	집행잔액 환수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2년	전액 환수
포기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경고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주의	해당없음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경고	해당금액 환수
	☐ 협약기간 종료이후 사업비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 위배	☐ 사업 결과물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경고	해당 없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 중간점검, 완료평가 결과(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경고	해당없음 (필요시환수)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 연간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연간 주의 2회 = 경고 1회<개정 2021.03.04.><개정 2023.03.30.>
※ 경고 및 주의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
- *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 <신설 2021.03.04.><개정 2023.03.30.>
-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신설 2023.03.30.>
- * 제재 및 환수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 <신설 2023.03.30.> <개정 2024.01.0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92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2025년 지원사업 목록

NO	지원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1	기술지원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R&D)	전략산업팀
2		대기업-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3	마케팅· 판로지원	맞춤형 온라인 판로지원	판로지원팀
4		용인 기업 기획전 입점 지원	
5		TV 홈쇼핑 입점 지원	
6		공공판로 입점 컨설팅	
7		마케팅 지원	
8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9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지사화 지원)	
10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해외TV홈쇼핑 입점지원)	
11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1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온/오프 마케팅 지원	인프라지원팀
13	사업화 지원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지원	전략산업팀
14		인증·특허 지원	사업화지원팀
15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인증 지원	
16		시제품 제작 지원	
17		인공지능 활용 제품개발 지원	
18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시제품 제작지원)	인프라지원팀
19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인증 지원)	
20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반부장 소공인 패키지 지원	
2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 소공인 패키지 지원	
22		작업환경 개선사업	
2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제작 지원	
24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	
25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물류비 지원)	판로지원팀
26		공공조달등록	
27	창업지원	맞춤형 창업지원(사업화/마케팅 지원)	창업지원팀
28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사업)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당해년도 기준)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빨간색 표기)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 사업에 2회 이상 수혜 불가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사업신청 및 선정

-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신청서는 지원 제외됨
- 서류검토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 진흥원 내부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별첨 참고)
 -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서류검토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사업 수행 중 혹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함
- 사업기간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 사업기간 내 관외 지역으로 이전 혹은 진흥원 입주기업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 취소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금 미지급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지원 제외됨
 - ※ 접속이 물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통관세금(관세), 은행 송금(이체) 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 ex) A제품을 목업 5개를 제작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A제품의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별첨]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유사사례 중심)

사업구분	사례유형	세부내용	중복여부
인증/ 특허출원	동일제품/동일인증	[A제품] KC인증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중복 O
	동일제품/동일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중복 O
	동일제품/상이인증	[A제품] KC인증 → 경기도 지원 GS인증 → 진흥원 지원	중복 X
	동일제품/상이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 경기도 지원 해외특허 →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인증	[A제품] ISO인증 → 용인시 지원 [B제품] ISO인증 →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 용인시 지원 [B제품] 국내특허 → 진흥원 지원	중복 X
시제품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목업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중복 O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A제품] 금형 → 경기도 지원 PCB제조 →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금형 → 경기도 지원 [B제품] 금형 → 진흥원 지원	중복 X
마케팅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중복 O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A제품] 카탈로그 제작 → 경기도 지원 리플렛 제작 →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SNS광고 → 용인시 지원 [B제품] SNS광고 → 진흥원 지원	중복 X
해외물류비 지원*	동일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A]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중복 O
	상이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A] → 경기도 지원 [수출신고번호 B] → 진흥원 지원	중복 X
지역현안	동일아이템/동일지원내용	[A아이템] 시제품 제작-용역비 → 창진원(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중복 O
	동일아이템/상이지원내용	[A아이템] 플랫폼 제작 -인건비, 광고비 등 → 창진원 지원 - 시제품 제작, 용역비 →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아이템/동일지원내용	[A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 창진원 지원 [B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 진흥원 지원	중복 X

* 수출건수(수출신고번호) 기준으로 중복여부 판단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중복 기준 적용

* 중복지원 기준은 외부기관 뿐만 아니라 진흥원 내부사업 간에도 적용